

의안번호	2201543
의 퇴 인	민병덕의원
회 답 일	2024.09.13.
추 계 번호	24D178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4조제2항(선거벽보) 신설	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·성명·학력·경력과 소속정당의 기호 및 정강 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작성·첨부	의무규정
2	안 제67조제1항(현수막)·안 제79조제3항(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답)	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·면·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답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4조제2항(선거벽보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7조제1항(현수막)·안 제79조제3항(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답)	미대상 현수막 제작 및 개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¹⁾ 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의 유효득표율 등에 따라 보전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1) 현행법에 따라 현수막 제작 및 개시,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답을 위한 확성장치 등의 이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은 정당이 지출고 보전받음

2. 상세 사유

□ 비례대표후보자의 선거벽보 첨부(안 제64조제2항 신설)

-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모두의 사진·성명·학력·경력과 소속정당의 기호 및 정강 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벽보를 작성 및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벽보 작성 및 첨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
 - 선거벽보 관련 비용 중 기획 및 도안료는 선거운동 비용으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전받고 첨부 및 철회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첨부 및 철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²⁾
- 다만,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선거벽보 규격, 해당 규격과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수에 따른 선거벽보 매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가장 최근 공직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은 총 37개이고 후보자는 총 245명이며, 1개 정당에서 최대 35명의 후보자를 등록
 - 개정안이 시행되고 1개 정당에서 3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등록한다면, 35명의 사진·성명·학력·경력과 소속정당의 기호 및 정강 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벽보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
 - 다만, 최대 수십 명에 달하는 후보자의 정보를 담기 위한 선거벽보의 규격, 해당 규격에 따른 정당별 선거벽보의 매수 등을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) 선거벽보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에서 지출하고 보전 받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는 아님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